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1210 호 2019. 12. 26.(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9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0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1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2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3호[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4호[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 40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1호[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44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53호[2020년도 예산 고시]····· 5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55호[공유수면 준공검사확인 고시]····· 5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56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5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60호[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5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62호[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5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6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5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6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0

안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1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등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성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과 홍보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 유형, 성별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제5조)

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제6조)

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7조)

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홍보(제8조)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9조 ~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6.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아동위원

제13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동별로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해촉) 아동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7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제18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2. 한 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4.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5. 기관·단체 및 학교장·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센터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20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사업비 및 교재, 교구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센터 운영비, 기능보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준심의 및 심사

4.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5장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및 성학대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및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아동복지 향상과 관련한 각각의 조례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나. 용어 정의 신설(제2조)

다. 소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제12조)

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제18조 ~ 제24조)

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항 신설(제25조 ~ 제32조)

바.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대응반장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을 쉽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할 경우에는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및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업무연락관은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의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의 규모와 재난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현장대응반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9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4. 제18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5. 제20조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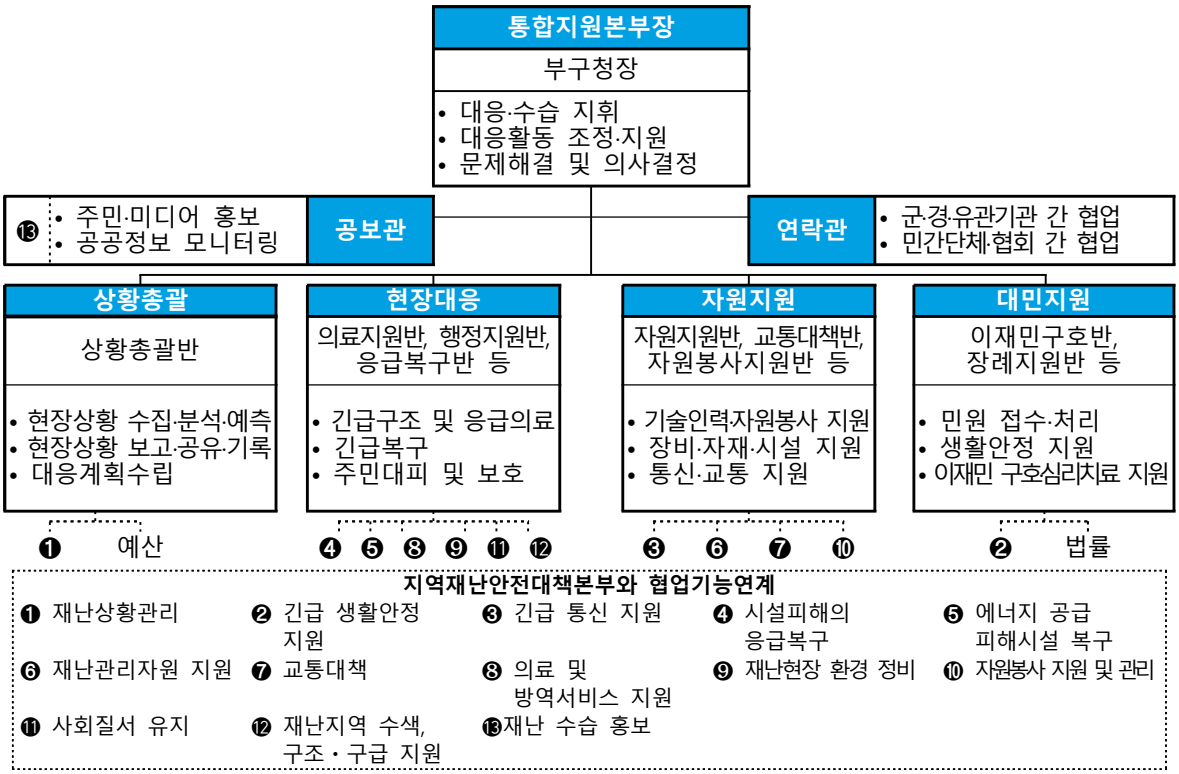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대응반장의 지정(제4조 ~ 제9조)

-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경우, 설치 위치, 실무반 편성 및 업무
- 긴급구조 활동시 업무연락관 파견
-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현장대응반장의 지정

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제10조 ~ 제17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순으로 대응

다. 권한의 위임 신설(제23조)

-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재난현장 출동지원 등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위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에”를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 대상)”을 “(지원 결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내용)”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를 “원인제공자”로 하고, “지급받은”을 “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로, 제7조 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1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4조에 따라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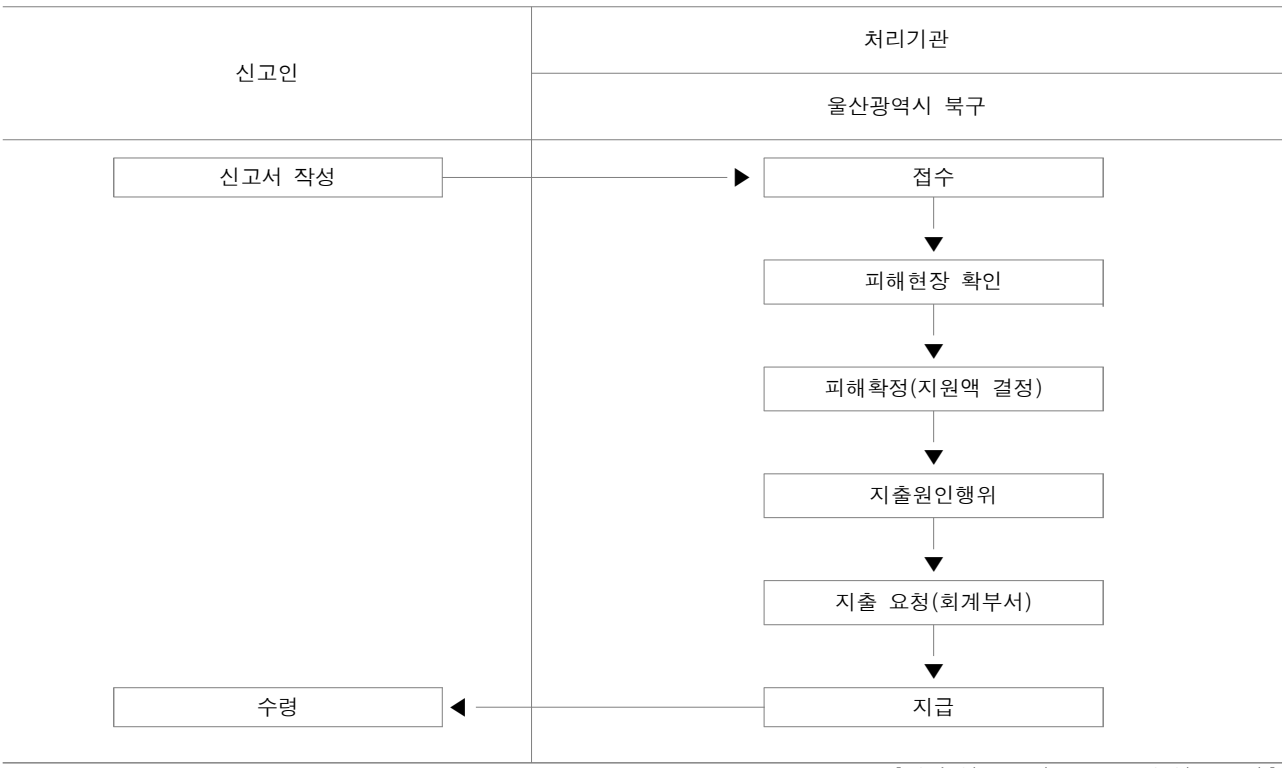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제4조 등)

나.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제5조제3항)

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사항 신설 (제5조의2 ~ 제5조의3)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마.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자 정보 중 주거형태 작성란 추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해당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건소 수질검사·시험 관련 수수료 미반환 규정이 국민권익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미반환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수질검사 ·시험 출장여비 관련 시험의뢰자의 사전 납부규정 삭제 (제8조제3항)

나. 수질검사·시험을 위해 기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의 미반환 규정 삭제 (8조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용근로자의”를 “일용노동자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노동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

자들이”를 “노동자들이”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로자들이”를 “노동자들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의욕이”를 “노동의욕이”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근로자에”를 “노동자에”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7호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외 6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북구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5.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보호자 대표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사안건은 별표 1에 따라 심사하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심사점수 평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심사점수 80점 이상: 적합

2. 심사점수 8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 기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건축법」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8조제4항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여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	□ 준수 □ 미준수

항목	세부 기준 및 배점	점수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산·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서비스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위원들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총 심사점수**: _____ 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제1조 ~ 제3조)

나. 위원에 관한 사항(제4조 ~ 제7조)

다. 회의에 관한 사항(제8조 ~ 제10조)

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53호

2020년도 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20년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19. 12. 13.

□ 2020년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73,435,078	100.00%	314,081,758	100.00%	59,353,320	18.90%
일반회계	370,976,966	99.34%	311,948,333	99.32%	59,028,633	18.92%
특별회계	2,458,112	0.66%	2,133,425	0.68%	324,687	15.22%
기타특별회계	2,458,112	0.66%	2,133,425	0.68%	324,687	15.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1,191	0.05%	162,820	0.05%	8,371	5.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6,100	0.02%	53,600	0.02%	22,500	41.98%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754	0.00%	7,134	0.00%	△5,380	△75.41%
주차장특별회계	2,209,067	0.59%	1,909,871	0.61%	299,196	15.67%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370,976,966	100.00 %	311,948,333	100.00 %	59,028,633	18.92 %
100 지방세수입	75,637,000	20.39 %	70,463,000	22.59 %	5,174,000	7.34 %
110 지방세	75,637,000	20.39 %	70,463,000	22.59 %	5,174,000	7.34 %
200 세외수입	23,290,199	6.28 %	19,223,655	6.16 %	4,066,544	21.15 %
210 경상적세외수입	17,976,843	4.85 %	17,215,573	5.52 %	761,270	4.42 %
220 임시적세외수입	5,313,356	1.43 %	2,008,082	0.64 %	3,305,274	164.60 %
300 지방교부세	11,416,000	3.08 %	4,800,000	1.54 %	6,616,000	137.83 %
310 지방교부세	11,416,000	3.08 %	4,800,000	1.54 %	6,616,000	137.83 %
400 조정교부금등	45,060,720	12.15 %	44,737,280	14.34 %	323,440	0.72 %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5,060,720	12.15 %	44,737,280	14.34 %	323,440	0.72 %
500 보조금	204,302,553	55.07 %	161,967,710	51.92 %	42,334,843	26.14 %
510 국고보조금등	135,707,378	36.58 %	107,534,971	34.47 %	28,172,407	26.20 %
520 시·도비보조금등	68,595,175	18.49 %	54,432,739	17.45 %	14,162,436	26.02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70,494	3.04 %	10,756,688	3.45 %	513,806	4.78 %
710 보전수입등	10,700,000	2.88 %	10,200,000	3.27 %	500,000	4.90 %
720 내부거래	570,494	0.15 %	556,688	0.18 %	13,806	2.48 %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70,976,966	100.00 %	311,948,333	100.00 %	59,028,633	18.92 %
010 일반공공행정	17,744,676	4.78 %	14,961,391	4.80 %	2,783,285	18.60 %
020 공공질서및안전	1,767,654	0.48 %	1,565,883	0.50 %	201,771	12.89 %
050 교육	837,825	0.23 %	709,670	0.23 %	128,155	18.06 %
060 문화및관광	24,276,914	6.54 %	20,337,227	6.52 %	3,939,687	19.37 %
070 환경	11,915,747	3.21 %	11,178,421	3.58 %	737,326	6.60 %
080 사회복지	198,386,584	53.48 %	157,565,739	50.51 %	40,820,845	25.91 %
090 보건	9,211,460	2.48 %	8,115,785	2.60 %	1,095,675	13.50 %
100 농림해양수산	21,150,281	5.70 %	16,778,818	5.38 %	4,371,463	26.05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729,903	0.74 %	1,769,117	0.57 %	960,786	54.31 %
120 교통및물류	9,315,148	2.51 %	6,020,978	1.93 %	3,294,170	54.71 %
140 국토및지역개발	15,017,065	4.05 %	16,956,277	5.44 %	△1,939,212	△11.44 %
160 예비비	3,117,014	0.84 %	3,145,150	1.01 %	△28,136	△0.89 %
900 기타	55,506,695	14.96 %	52,843,877	16.94 %	2,662,818	5.0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255호

공유수면 준공검사확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건의 준공검사확인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성명 : 백봉*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2로 **, 105동 *호(산하동, ***시티 *차 ****아파트)

2. 공사 내용 : 농지 진입에 따른 진출입로

3. 점용·사용의 장소 : 신현동 958-**번지

4.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19. 12. 1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2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12. 18.

2. 점용·사용의 목적 : 기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제8조제1항제11호)

3. 점용·사용의 장소 : 어물동 1240-59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150㎡

나. 기 간

- 일시 : 2019. 12. 18. ~ 2024.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이명*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길 34-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60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19. 12. 20.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88,150,908	100.00%	372,281,719	100.00%	15,869,189	4.26%
일반회계	384,551,842	99.07%	368,682,775	99.03%	15,869,067	4.30%
특별회계	3,599,066	0.93%	3,598,944	0.97%	122	0.00%
기타특별회계	3,599,066	0.93%	3,598,944	0.97%	122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7,470	0.05%	197,348	0.05%	122	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5,700	0.01%	55,700	0.01%	0	0.0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37,770	0.22%	837,770	0.23%	0	0.00%
주차장특별회계	2,508,126	0.65%	2,508,126	0.67%	0	0.00%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384,551,842	100.00 %	368,682,775	100.00 %	15,869,067	4.30%
100 지방세수입	70,713,000	18.39 %	70,663,000	19.17 %	50,000	0.07 %
110 지방세	70,713,000	18.39 %	70,663,000	19.17 %	50,000	0.07 %
200 세외수입	21,458,613	5.58 %	21,487,644	5.83 %	△29,031	△0.14 %
210 경상적세외수입	17,211,552	4.48 %	17,224,422	4.67 %	△12,870	△0.07 %
220 임시적세외수입	4,247,061	1.10 %	4,263,222	1.16 %	△16,161	△0.38 %
300 지방교부세	14,405,392	3.75 %	8,585,392	2.33 %	5,820,000	67.79 %
310 지방교부세	14,405,392	3.75 %	8,585,392	2.33 %	5,820,000	67.79 %
400 조정교부금등	53,749,280	13.98 %	53,229,280	14.44 %	520,000	0.98 %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3,749,280	13.98 %	53,229,280	14.44 %	520,000	0.98 %
500 보조금	204,303,583	53.13 %	194,795,485	52.84 %	9,508,098	4.88 %
510 국고보조금등	131,859,588	34.29 %	128,088,486	34.74 %	3,771,102	2.94 %
520 시·도비보조금등	72,443,995	18.84 %	66,706,999	18.09 %	5,736,996	8.60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921,974	5.18 %	19,921,974	5.40 %	0	0.00 %
710 보전수입등	19,337,132	5.03 %	19,337,132	5.24 %	0	0.00 %
720 내부거래	584,842	0.15 %	584,842	0.16 %	0	0.00 %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84,551,842	100.00 %	368,682,775	100.00 %	15,869,067	4.30 %
010 일반공공행정	19,079,074	4.96 %	18,923,513	5.13 %	155,561	0.82 %
020 공공질서및안전	2,818,755	0.73 %	2,376,939	0.64 %	441,816	18.59 %
050 교육	1,969,960	0.51 %	1,967,960	0.53 %	2,000	0.10 %
060 문화및관광	26,338,906	6.85 %	23,566,921	6.39 %	2,771,985	11.76 %
070 환경보호	11,221,175	2.92 %	11,436,171	3.10 %	△214,996	△1.88 %
080 사회복지	195,987,453	50.97 %	189,300,752	51.35 %	6,686,701	3.53 %
090 보건	9,553,991	2.48 %	9,552,019	2.59 %	1,972	0.02 %
100 농림해양수산	21,921,384	5.70 %	20,347,624	5.52 %	1,573,760	7.73 %
110 산업·중소기업	3,953,348	1.03 %	3,911,080	1.06 %	42,268	1.08 %
120 수송및교통	16,197,932	4.21 %	11,744,569	3.19 %	4,453,363	37.92 %
140 국토및지역개발	20,781,289	5.40 %	20,175,790	5.47 %	605,499	3.00 %
160 예비비	1,494,992	0.39 %	1,477,935	0.40 %	17,057	1.15 %
900 기타	53,233,583	13.84 %	53,901,502	14.62 %	△667,919	△1.2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2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12. 25.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진출입로 개설(BOX(2.0*1.5), L=4m)]

3. 점용·사용의 장소 : 신현동 958-54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12㎡

나. 기 간 - 2019. 12. 15. ~ 2024.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민정*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구 **9길3*, 1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26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8길 36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2.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 지구 17B 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8길 36	2019-12-26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이름으로친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06-14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24길 3-1	2019-12-26	당수나무가있는당수골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을부여함.	2017-05-04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85-11,4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71	2019-12-26	법정동이름을사용하여매곡로에인근한위치성을고려해서도로명을부여	2009-04-08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19-3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5길 1-2	2019-12-26	기존자연마을인약수마을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26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중산동로 8-46 외 2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2.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로 8-46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34-28	2019-12-26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125-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47-2	2019-12-26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77-25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31-1	2019-12-26	건축물 멸실	